

2편 학칙

제1장 학칙

제2장 학사규정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원대학교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의거 대한민국 교육 이념 및 복음주의적 신학에 입각하여 신학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자적 인격을 함양하고 독창적인 능력을 계발하여 국가 및 세계복음화와 교회 발전에 헌신하는 신학자와 사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5)

제2조(명칭) 본 대학원대학교는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라 한다. (신설 1999.3.1)

제 2 장 과정 및 인원

제3조(과정) 본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개정 2001.3.1, 2003.10.1, 2005.12.5)

제4조(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3.1, 2001.3.1, 2003.3.1, 2003.10.1, 2004.11.15, 2005.12.5, 2008.12.08)

제5조(학위) 본교에는 다음과 같은 학위과정을 둔다. (개정 1999.3.1, 2001.3.1, 2003.10.1, 2005.12.5, 2011.9.19, 신설 2014.9.1)

1. 문학석사 (M.A.)
2. 목회학석사 (M.Div.)
3. 신학석사 (Th.M.)
4. 일반신학석사 (M.T.S.)
5. 철학박사 (Ph.D.)
6. 교육학석사 (M.Ed.)
7. 예배음악석사 (M.W.C.M.) (신설 2014.9.1. 개정 2015.3.1)

제5조의2(학위과정/전공 설치) 본교 학위과정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신설 2025.4.1.)

1. 석사학위과정/전공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전문대학원 신설 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전공 - 7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중 2분의 1이

2-1 학칙

상은 박사학위과정 또는 전공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3편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전공)(조개정 2025.4.1.) ① 석사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전공을 둔다. (신설 1999.3.1, 개정 2004.11.15, 2005.12.5, 2006.12.5, 2011.9.19, 신설 2014.9.1., 2016.10.1., 2025.3.1.)

1. 구약학 전공
2. 신약학 전공
3. 조직신학 전공
4. 교회사 전공
5. 선교학 전공
6. 실천신학 전공
7. 기독교교육학 전공
8. 기독교상담심리학 전공 (개정 2025.3.1.)
9. 통합신학연구 전공
10. 교육학 전공
11. (삭제 2018.2.26.)
12. 예배음악전공 (신설 2014.9.1., 개정 2018.2.26.)
13. 기독교영성 전공 (신설 2016.10.1.)

② 부전공 및 전공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규정에 의한다. (신설 1999.3.1, 개정 2006.12.5)

③ 박사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전공을 둔다. (신설 2011.9.19, 개정 2013.9.30., 2025.3.1.)

1. (삭제 2018.2.26.)
2. (삭제 2018.2.26.)
3. (삭제 2018.2.26.)
4. 기독교상담심리학 전공 (개정 2025.3.1.)
5. (삭제 2018.2.26.)
6. 신학 전공

제 3 장 입 학

제7조(입학시기) 본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입학자격) 본교의 각 과정별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0.1)

1. 문학석사, 목회학석사, 일반신학석사, 교육학석사, 예배음악석사(개정 2005.12.5,

2011.9.19, 2013.9.30, 신설 2014.9.1, 개정 2015.3.1)

가.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각 전공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개정 1999.3.1, 2005.12.5)

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13.9.30)

다. 목회학석사과정은 목회의 소명이 분명한 자 (개정 1999.3.1)

라. 예배음악석사과정은 오디션을 통과한 자(신설 2014.9.1, 개정 2015.3.1)

2. 신학석사

가.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각 전공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개정 1999.3.1, 2005.12.5)

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목회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1999.3.1, 2013.9.30)

3. 철학박사 (신설 2005.12.5)

가.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각 전공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계열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06.12.5, 2013.9.30)

제9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신입학과 편·재입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9.30, 2022.3.1)

② (삭제 2013.9.30)

③ (삭제 2013.9.30)

제10조(지원절차) 본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재·편입학 포함)을 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5)

제11조(정원외학생의입학) ①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정하는 정원외 입학기준을 충족시키는 외국인,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에 한하여 정원외 입학으로 선발한다. 정원외 입학은 전략적선교장학금(TSMS) 전형과, 정원외전형 및 Expat 전형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개정 2008.12.08, 2011.9.19, 2013.9.30, 2022.3.1)

② 기타 세부사항은 학사규정 및 전략적선교장학금(TSMS)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12.5, 2013.9.30, 2022.3.1)

제12조(입학제한)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조교 제외)은 원칙적으로 본교에 입학할 수 없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하되 수학기간 동안 휴직하여야 한다.

제13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해당학년도 정원여석 안에서 모집할 수 있다. 단, 전적 대학원에서의 징계제적자인 경우 편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5, 2022.3.1)

2-1 학칙

- ② 편입생은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취득학점을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본교 교과목 및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6.12.5)

제14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해당학년도 정원여석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적 또는 자퇴한 자는 제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으며, 학사경고누적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1학기 유예기간을 둔다. (개정 2001.3.1, 2006.12.5, 2010.12.7, 2011.11.28, 2020.3.1., 2022.3.1., 2023.8.1.)

- ② 재입학자는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5, 2022.3.1)
- ③ (삭제 2020.3.1)
- ④ (삭제 2020.3.1)

제 4 장 수업연한, 학점, 교과과정

제 1 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5조(수업연한) ①문학석사(M.A.)과정, 신학석사(Th.M.)과정, 일반신학석사(M.T.S.)과정, 교육학석사(M.Ed.)과정, 예배음악석사(M.W.C.M.)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목회학석사(M.Div.)과정, 철학박사(Ph.D.)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개정 1999.3.1, 2001.3.1, 2003.3.1, 2003.10.1, 2005.12.5, 2011.9.19, 2012.8.20., 2015.3.1., 2018.2.26, 2022.3.1.)

- ②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과정은 2학기 이내, 박사과정은 1학기 이내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 (신설 2022.3.1)

제15조의2(재학연한) 문학석사(M.A.)과정, 신학석사(Th.M.)과정, 일반신학석사(M.T.S.)과정, 교육학석사(M.Ed.)과정, 예배음악석사(M.W.C.M.)과정의 재학연한은 4년, 목회학석사(M.Div.)과정은 5년, 철학박사(Ph.D.)과정 신학 전공은 5년, 기독교상담심리학 전공은 7년으로 한다. 모든 학생은 논문을 포함한 학위과정을 재학연한 내에 마쳐야 한다. 단, Expat 학생의 재학연한은 각 과정별 재학연한의 2배로 한다. (신설 2003.3.1, 개정 2003.10.1, 2005.12.5, 2011.9.19, 2015.3.1., 2018.2.26., 2022.3.1., 2025.3.1.)

제16조(취득학점) ① 본교에서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0.1., 2013.9.30., 2018.2.26., 2025.3.1.)

1. 문학석사

전 공	취득학점	비 고
기독교교육학	45학점	2018 커리큘럼 이후
	45학점 또는 46학점(논문작성시)	2013-2017 커리큘럼
기독교상담심리학	49학점	2025 커리큘럼 이후
	47학점	2018 커리큘럼 이후
	45학점 또는 46학점(논문작성시)	2011-2017 커리큘럼

(개정 1999.3.1, 2004.11.15, 2005.12.5, 2008.12.08, 2009.11.23., 2013.9.30., 2018.2.26., 2025.3.1.)

2. 목회학석사

전 공	취득학점	비 고
(전공 없음)	85학점	2018 커리큘럼 이후
	95학점	2008-2017 커리큘럼

(개정 2005.3.1., 2008.12.08., 2018.2.26.)

3. 신학석사

전 공	취득학점	비 고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선교학 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 통합신학연구	30학점	2018 커리큘럼 이후
	34학점	1998-2017 커리큘럼
기독교영성	30학점	2025 커리큘럼 이후
	29학점	2018 커리큘럼 이후
	27학점 (논문작성시 29학점)	2017 커리큘럼

(개정 2005.12.5, 2006.12.5, 2008.12.08., 2011.11.28., 2016.10.1., 2018.2.26., 2025.3.1.)

4. 일반신학석사

전 공	취득학점	비 고
(전공 없음)	38학점	2018 커리큘럼 이후
	42학점	2010-2017 커리큘럼

(신설 2005.12.5, 개정 2009.11.23., 2018.2.26.)

5. 철학박사

전 공	취득학점	비 고
-----	------	-----

2-1 학칙

기독교상담심리학	66학점	2018 커리큘럼 이후
	65학점	2009-2017 커리큘럼 (단, 신학관련 석사학위 미소지자는 입학후 처음 1년간 신학 24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신학	23학점과 5유닛	2021 커리큘럼 이후
	25학점과 6유닛	2015 -2020 커리큘럼
	28학점과 6유닛	2014 커리큘럼 (2013 이전 학생은 2014 커리큘럼으로 전환)

(신설 2005.12.5, 개정 2006.12.5, 2008.12.08, 2011.11.28., 2013.9.30, 2015.3.1., 2018.2.26., 2021.3.1., 2025.3.1.)

6. 교육학석사

전 공	취득학점	비 고
(전공없음)	36학점	2018 커리큘럼 이후
	37학점 (논문작성시 38학점)	2014-2017 커리큘럼

(신설 2011.11.28, 개정 2013.9.30, 2015.3.1., 2018.2.26.)

7. 예배음악석사

전 공	취득학점	비 고
(전공없음)	36학점	2023 커리큘럼 이후
	45학점	2015-2022 커리큘럼

(신설 2015.3.1., 개정 2023.3.1.)

② (신설 2020.3.1., 삭제 2022.3.1.)

제16조의 2(학점인정) 학생이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13.9.30.)

제 2 절 교육과정

제17조(교육과정) 각 과정의 교육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교과목의 개설) ① 각 전공분야의 학과장은 교과목 신설 요청서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1., 2018.2.26.)

② 각 과정별 교과목에 대한 개설 최소수강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9.30)

제18조의 2(교과의 이수단위)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의 학점단위는 별도로 정한다.

(조신설 2013.9.30)

제19조 (삭제 2006.12.5.)

제19조의 2(수업) ① 수업은 정규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2.26., 개정 2021.3.1)

② (삭제 2021.3.1)

③ 수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사규정 및 원격수업에 관한 시행세칙에 정한다. (신설 2020.3.1.)

제20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조개정 2006.12.5, 2013.9.30)

제20조의2(학년도·학기) ①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학기의 수업은 학기 개시일 전후에 개강 할 수 있다.

1.봄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가을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개정 2013.12.31)

③ 학기 중 방학기간에 계절학기(여름학기 또는 겨울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조신설 2006.12.5, 개정 2013.12.00)

④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학처장은 방학기간에 개설되는 집중과정(모듈라 수업)에 대하여 당해학기 또는 다음 학기로 지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13.8.31, 개정 2013.12.31., 2018.2.26.)

⑤(신설 2013.9.30, 개정 2013.12.31., 삭제 2018.2.26.)

제20조의3(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 공휴일

2. 일요일

3. 하계 및 동계방학

② 임시 공휴일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신설 2006.12.5)

제20조의4(교원의 강의책임시간) 본교 전임교원의 강의책임시간은 강의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3.9.30., 개정 2018.2.26.)

제21조(학업평가) ① 학업성적평가의 등급 및 평점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1.3.1, 2013.9.30., 2014.9.1., 2018.2.26.)

등 급	평 점	점 수
A	4.0	95 - 100
A-	3.7	90 - 95미만
B+	3.3	87 - 90미만
B	3.0	84 - 87미만
B-	2.7	80 - 84미만
C+	2.3	77 - 80미만
C	2.0	74 - 77미만
C-	1.7	70 - 74미만
D+	1.3	65 - 70미만
D	1.0	60 - 65미만
F	0.0	60점 미만
P	불계	합격
NP	불계	불합격
IP	In Progress - 논문 과목에 한함 (불계)	
W	Withdrawal (불계)	
I	Incomplete (불계)	
GR	Grade Replaced (성적대체, 불계)	

② (삭제 2013.9.30.)

③ P/NP는 해당 학생의 과정에 근거하여 학칙 제22조에 있는 이수인정학점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신설 2018.2.26.)

제22조(이수인정학점)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율이 강의 실시 시간의 4분의 3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석사과정은 D이상, 철학박사과정은 B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한다. 단,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은 목회학석사(M.Div.)과정은 2.0이상, 문학석사(M.A.)과정과 일반신학석사(M.T.S.)과정, 교육학석사(M.Ed.)과정, 예배 음악석사과정(M.W.C.M.)은 2.5이상, 신학석사(Th.M.)과정은 3.0이상, 철학박사(Ph.D.) 과정은 3.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9.3.1, 2001.3.1, 2003.3.1, 2003.10.1, 2005.12.5, 2006.12.5, 2008.12.08, 2011.11.28, 2013.9.30., 2015.3.1., 2018.2.26.)

제23조(학점취득제한) 각 과정별 전공분야의 취득학점은 매 학기 아래 규정된 학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점추가등록비를 내고 최대 추가 2학점까지(목회학석사과정은 최대 추가 3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03.3.1, 2003.10.1, 2006.12.5, 2013.9.30., 2014.9.1., 2018.2.26., 2025.3.1.)

1. 문학석사

전 공	학점취득제한	비 고
기독교교육학	14학점	2010 커리큘럼 이후
기독교상담심리학	14학점	2009 커리큘럼 이후

(개정 2003.3.1, 2004.11.15, 2005.12.5, 2009.11.23., 2018.2.26., 2025.3.1.)

2. 목회학석사

전 공	학점취득제한	비 고
(전공 없음)	17학점	2018 커리큘럼 이후
	18학점	1998-2017 커리큘럼

(개정 1999.3.1, 2003.3.1., 2018.2.26.)

3. 신학석사

전 공	취득학점	비 고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선교학 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 통합신학연구	9학점	2018 커리큘럼 이후
	10학점	1998-2017 커리큘럼
기독교영성	9학점	2017 커리큘럼 이후

(개정 2001.3.1, 2003.3.1, 2003.10.1, 2005.12.5, 2008.12.08., 2018.2.26.)

4. 일반신학석사: 12학점 (신설 2005.12.5.)

5. 철학박사

전 공	취득학점	비 고
기독교상담심리학	12학점	2009 커리큘럼 이후
신학	10학점	2014 커리큘럼 이후

(신설 2005.12.5, 개정 2006.12.5, 2008.12.08, 2011.11.28, 2013.9.30., 2018.2.26., 2025.3.1.)

6. 교육학석사: 11학점 (신설 2011.11.28, 개정 2014.9.1.)

7. 예배음악석사

전 공	학점취득제한	비 고
(전공 없음)	11학점	2023 커리큘럼 이후
	14학점	2015-2022 커리큘럼

(신설 2015.3.1., 개정 2023.3.1.)

제24조(선수과목) ① 전공과목으로서 그 이수를 위하여 사전에 기초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교육과정에서 학과장에 의해 이를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1)

② 박사과정의 경우 별도로 정한 신학기초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6.12.5)

제25조(과정이수 및 인정시기) (개정 1999.3.1, 2005.12.5, 2013.9.30., 2015.3.1., 삭제 2018.2.26.)

제26조(사역실습) 본교 학생의 사역실습은 학사규정을 따른다. (신설 1999.3.1, 개정 2001.3.1, 2006.12.5., 2013.9.30., 2018.2.26.)

제27조(학사경고) 학사규정에서 정한 학점평균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학사경고 처리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9.3.1, 개정 2001.3.1)

제27조의2(부정행위자 징계) (조삭제 2017.5.8.)

제 5 장 등록 · 휴학 · 복학 · 제적 · 자퇴

제28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은 해당학기 등록금 일체를 납입함을 말한다.) (신설 2003.3.1.)

②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학기등록, 학점등록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3.3.1., 2020.3.1.)

③ 수업연한 내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5.)

④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이수하였으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

제28조의2(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5, 2013.9.30)

제29조(등록금의 반환) ① 학생이 학기 중 자퇴하는 경우, 해당학기의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한다. 단,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12.5)

② 등록금 반환에 관한 규정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신설 2006.12.5., 개정 2017.5.8)

제30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 제출시기 내에 휴학원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 2001.3.1, 2013.9.30)

② (삭제 2013.9.30)

③ (삭제 2013.9.30)

④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단, 특별휴학은 예외로 하며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6.12.5, 2013.9.30, 2022.3.1)

제31조(복학) ①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사유 소멸 시에는 해당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한하여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01.3.1)

- ②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제적 처리된다.

제32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이를 제적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1.3.1)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2. 소정 등록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개정 1999.3.1)
3. 학칙이 정하는 학위취득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재학연한이 만료된 자 (개정 1999.3.1, 2001.3.1, 2005.12.5., 2013.9.30., 2018.2.26.)
4. 타교에 입학하여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 (신설 1999.3.1, 개정 2005.12.5)
5. (삭제 2017.1.1)
6.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자 (목회학석사학위과정은 3회 이상) (신설 1999.3.1, 개정 2006.12.5)
7. (삭제 2017.1.1)
8.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을 결의한 자 (신설 1999.3.1, 개정 2006.12.5., 개정 2017.1.1)
9. (삭제 2017.1.1)

제33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의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 2013.9.30)

제34조(과정변경) ① 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여 교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9.3.1, 개정 2001.3.1, 2006.12.5)

- ② 전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6.12.5)

제 6 장 종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제35조(각종 시험, 논문 및 학위수여)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또는 성경시험, 학위논문 제출자격, 제출시기, 심사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5., 2018.2.26.)

제35조의2(수료) ① 학생이 과정별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이수학점과 졸업평점평균을 취득한 경우 수료로 인정한다. (개정 2013.9.30., 2018.2.26., 2020.3.1.)

- ②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로 정한다. (개정 2013.9.30., 2022.3.1)

- ③ (삭제 2013.9.30.)

- ④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재학연한내에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 박사과정위원회 또는 교학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논문작성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3.1.)

제35조의3(졸업) ① 과정별 졸업기준은 별표2과 같다. (개정 2013.9.30., 2014.9.1., 2015.3.1., 2016.10.1., 2017.2.1., 2023.8.1.)

② 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6.12.5.)

③ 외국국적자의 경우 졸업 전까지 해당하는 언어의 공인언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규정에 의한다. (신설 2022.3.1.)

제35조의4(학위수여) ①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는 학년도말에 수여한다. 다만, 졸업요건에 달하는 자가 추가로 생긴 때에는 학기 말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박사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이 학위수여 전에 공표되었거나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총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규정에 따른다. (조신설 2006.12.5)

제35조의5(학위의 종류) 본교가 수여하는 대학원 석·박사학위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조신설 2006.12.5, 개정 2015.3.1)

제35조의6(학위수여의 취소) 본교가 수여하는 학위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조신설 2006.12.5, 개정 2010.10.1)

제 7 장 공개강좌, 청강, 선이수수강, 계절학기, 연구생 및 교환학생

제36조(공개강좌) ① 본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원격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1.11.28)

② 공개강좌는 신학적, 성경적 지식을 습득하고 사역과 영성생활을 성장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1)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6조의2(청강) ①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1.3.1)

② 청강은 신학학위 또는 학점의 취득없이 본교의 학문적 성과를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01.3.1)

③ 담당교수의 허가에 의해 청강할 수 있다. (신설 2001.3.1)

④ 본교 재학생이 아닌 청강자는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3.1)

제36조의3(선이수수강) (삭제 2013.9.30)

제36조의4(계절학기) ①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매 계절학기에 9학점 까지 취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6.1)

②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5.6.1)

제37조(연구생) ① 본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신설 1999.3.1)

② 연구생의 입학자격은 따로 정한다. (신설 1999.3.1)

③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9.3.1)

제38조(교환학생) ① 총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환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신설 2001.3.1)

② 교환학생은 국외 신학대학원에 정규 등록된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라야 한다. (신설 2001.3.1)

③ 교환학생은 정원 외로 모집한다. (신설 2001.3.1)

④ 교환학생에 관한 기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1.3.1)

제38조의 2(학점교류생) ① 국내외 신학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본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학처장의 승인 하에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② 학점교류생은 소속대학원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 본교에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9.30)

제 8 장 장학금 및 상벌

제39조(학생의 의무) 본교의 학생은 본 학칙을 준수하고 총장의 감독을 받아 학업에 전념

2-1 학칙

하여야 한다.

제40조(장학금) ①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또는 세부사항에서 정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3.1., 2018.8.20.)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12.5)

제41조(징계) ① 본교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생준수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3.3.1., 2017.5.8)

② (삭제 2017.5.8)

③ (삭제 2017.5.8)

제41조의2(포상) ①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현저하게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학생준수규정에 의한다.

(조신설 2006.12.5)

제 9 장 학생활동

제42조(학생활동) 본교 재학생의 모든 활동은 학교의 지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9.3.1)

제42조의2(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조신설 2006.12.5)

제42조의3(학생회 등) 학생은 건전한 학풍의 조성 and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학생회 등 학생단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신설 2006.12.5)

제42조의4(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①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은 교육과 연관된 장소에서 신체적 접촉 또는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성희롱)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한다.

(조신설 2006.12.5)

제 10 장 직제 및 위원회

제43조(직제) 본교 직제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의한다. (조개정 2006.12.5)

제44조(지도교수) ① 본교의 교원 중에서 각 과정 및 과정의 전공마다 학사 및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개정2005.12.5, 2006.12.5, 2013.9.30)

② 지도교수는 해당학위과정 학생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2005.12.5)

제45조(대학원위원회) ① 본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3.1., 2005.12.5., 2016.5.1)

② 대학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6.12.5., 2016.5.1)

제45조의2(대학평의위원회) ① 본교에 대학평의위원회(이하“평의위원회”)를 둔다.

② 평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조신설 2006.12.5)

제45조의3(위원회)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교수회를 둘 수 있다. (조신설 2006.12.5)

제45조의4(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교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조신설 2010.12.7)

제46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의 임무는 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5.1)

② 평의위원회의 결정은 다른 모든 위원회의 결정보다 우선되며 최종적이다.(신설 2006.12.5)

제4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1.3.1., 2016.5.1)

제48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작성한다. (신설 2001.3.1.)

제 11 장 부속 및 부설기관

2-1 학칙

제49조(부속기관) ① 본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3.1, 2011.3.1)

1. 도서관 (개정 2001.3.1)

2. 학생생활관

제50조(부설기관) ① 본교에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3.1, 2001.3.1, 2006.12.5)

1. 선교 연구원 (개정 1999.3.1)

2. 성서학 연구센터 (개정 1999.3.1, 2005.12.5)

3. 영성형성과 실천신학 센터 (개정 1999.3.1., 2018.8.20)

4. 상담센터 (신설 2003.3.1, 개정 2005.12.5)

5. (삭제 2020.3.1)

6. 한국이슬람연구소 (신설 2006.12.5, 개정 2009.11.23)

7. 평생교육원 (신설 2006.12.5)

8. 기독교교육센터 (신설 2008.12.08)

9. 원격평생교육원 (신설 2011.11.28.)

10. 인권센터 (신설 2023.8.1.)

제 12 장 보 칙

제51조(학칙 변경) ① 학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조신설 2006.12.5, 2012.8.20)

제52조(시행규칙)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6.12.5)

제53조(준용) 이 학칙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령에 준한다. (조신설 2006.12.5)

제54조(자체평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규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신설 2009.11.23)

부 칙

① (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② (시행일자) 본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본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절차) 본 학칙의 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개정안 사전 공고,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원위원회에 의해 본 학칙은 개정되며 총장에 의해 선포된다.
③ 개정된 사항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 제2장제4조의 정원은 200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 제2장제4조의 정원은 200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0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1 학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 제2장제4조의 정원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0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2-1 학칙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18 커리큘럼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6조(취득학점)에서 2018 이전 커리큘럼을 따르는 목회학석사과정 학생들의 졸업이수학점은 90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18 커리큘럼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5조의2(수료)에서 2018 이전 커리큘럼을 따르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논문지도II를 제외한 모든 졸업이수 학점을 취득한 경우 수료로 인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18 커리큘럼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6조(취득학점)에서 2016 이전 커리큘럼을 따르는 목회학석사과정 학생들의 졸업이수학점은 90학점 이상으로 하고, 2017 커리큘럼을 따르는 목회학석사과정 학생들의 졸업이수학점은 86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단, 제4장제15조의2 재학연한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장 제28조(등록)은 2022 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② (2013 박사과정 커리큘럼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6조(취득학점) 제1항 제5목에서 2012이전 커리큘럼을 따르는 박사과정 학생들의 졸업이수학점은 43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독교상담심리학 전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기독교상담학 전공은 기독교상담심리학 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졸업생/제적생 및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개정학칙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학칙

(별표)

대학원 정원표

(개정 2001.3.1, 2003.3.1, 2003.10.1, 2004.11.15, 2005.12.5, 2008.12.08, 2011.9.19, 2013.9.30, 2015.3.1, 2016.3.1, 2016.10.1, 2017.5.8., 2025.3.1.)

과 정	계 열	입학정원	학위구분	학 위	전 공	비 고
석 사	인 문	130	전문학위	문학석사	기독교교육학	2년과정
			전문학위		기독교상담심리학	
			전문학위	목회학석사		3년과정
			전문학위	신학석사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선교학, 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 통합신학연구, 성경과사역, 기독교영성	2년과정
			전문학위	일반신학석사		2년과정
			전문학위	교육학석사		2년과정
			전문학위	예배음악석사		2년과정
박 사	인 문	8	학술학위	철학박사	신학, 기독교상담심리학	3년과정
합 계	인 문	138	7개 학위, 2개 과정			

(별표 2)

과정별 졸업기준

(신설 2014.9.1., 개정 2014.9.1., 2015.02.02., 2016.10.1., 2017.2.1., 2018.2.26., 2019.3.1., 2021.3.1., 2023.3.1., 2023.8.1., 2025.3.1.)

학위과정		졸업요건	이수학점	평점평균(GPA)	그 외 요건
목회학석사			85학점	전학년 평점평균 2.0 이상	1. 수업연한 전학기 교내사역실습 (채플, 학교수련회) 이수 2. 성경시험 통과
문학석사	기독교교육학 전공		45학점	전학년 평점평균 2.5이상	1. 수업연한 전학기 교내사역실습 (채플, 학교수련회) 이수 2. 교외사역실습(현장실습) 2학기 이수 3. 종합시험 통과
	기독교상담심 리학전공		49학점	전학년 평점평균 2.5이상	1. 수업연한 전학기 교내사역실습 (채플, 학교수련회) 이수 2. 종합시험 통과
교육학석사			36학점	전학년 평점평균 2.5이상	1. 교외사역실습(현장실습) 2학기 이수 2. 종합시험 통과
일반신학석사			38학점	전학년 평점평균 2.5이상	1. 수업연한 전학기 교내사역실습 (학교수련회) 이수 2. 성경시험 통과
예배음악석사			36학점	전학년 평점평균 2.5이상	1. 수업연한 전학기 교내사역실습 (채플, 학교수련회) 이수 2. 종합시험 통과
신학석사과정			30학점	전학년 평점평균 3.0이상	1. 종합시험 통과
철학박사 과정	영어과정		23학점 및 Guided Research 5 Units	전학년 평점평균 3.0이상	1. 종합시험 및 논문 통과
	한국어과정 -기독교상담 심리학전공		66학점	전학년 평점평균 3.0이상	1. 종합시험 및 논문 통과 2. 인턴십 2학기 이수 인턴십 슈퍼비전 2학기 이수

* 상기 이수학점은 최종 커리큘럼의 이수학점이며, 다른 커리큘럼의 이수학점은 제16조(취득학점)에 따른다.

학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학전형규정

제 1 절 신입학

제2조(전형의 종류와 시기) ① 본교의 입학전형에는 특별전형, 일반전형, 정원외전형, TSMS전형 및 Expat전형이 있다. (개정 2011.9.19, 2011.11.28, 2013.9.30, 2022.3.1)

② (삭제 2022.3.1)

③ 입학전형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④ TSMS전형은 “TSMS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신입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1.11.28)

제3조(제출서류) ① 본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자는 입학요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8)

② (삭제 2020.3.1)

③ 박사과정 지원자의 경우 각 전공별 추가서류가 요구된다.

제4조(일반전형) ①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성경시험, 영어, 면접 및 인성검사로 구성된다. (개정 2013.9.30, 2022.3.1)

② 서류심사는 지원서, 개인신양간증문, 대학 및 대학원의 성적, 추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1.11.28., 2013.9.30., 2018.2.26., 2022.3.1.)

③ 신학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지원자는 성경시험에서 면제된다. (개정 2011.9.19, 2013.9.30)

④ 면접은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지식과 능력, 적성, 소명의식, 인격에 대하여 심사한다. 면접위원 중 한 사람이라도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의 점수를 주면 불합격 처리한다.

(개정 2011.11.28., 2013.9.30., 2022.3.1.)

⑤ (삭제 2011.9.19)

⑥ 지원자가 전형과목 중 하나라도 미응시하는 경우에는 입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한다. (개정 2013.9.30., 2022.3.1.)

⑦ (신설 2013.9.30., 삭제 2022.3.1)

⑧ 예배음악석사과정은 실기 오디션을 실시한다.(신설 2015.3.1)

제5조(특별전형 지원자격) ①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은 입학요강에 따른다. (개정 2011.9.19)

②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인성검사 및 면접으로 구성된다. 서류심사 및 면접에서 면접위원 중 한 사람이라도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의 점수를 주면 불합격 처리한다. (개정 2013.9.30., 2022.3.1.)

③ (삭제 2013.9.30)

④ (삭제 2013.9.30)

제5조의2(정원외입학) 정원외전형 및 Expat전형은 서류심사, 영어/한국어 능력, 면접 및 인성검사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성경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9.30, 개정 2022.3.1.)

제6조(외국국적자의 언어능력) 모든 전형의 외국국적 지원자는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공인언어능력 성적(최근 2년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국어과정은 한국어, 영어과정은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 출신자가 현지에서 해당언어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예외로 한다. (조변경 2022.3.1.)

1. 한국어과정 - TOPIK 4급 이상 (신설 2022.3.1.)

2. 영어과정 - TOEFL-iBT 71, IELTS 5.5, TEPS 326이상 (신설 2022.3.1.)

제7조(출제위원 및 심사위원) 총장은 입학전형의 출제위원 및 심사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3.9.30)

제8조(합격사정) 입학(편입학 포함)은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승인한다.(개정 2013.9.30)

제9조(합격자 발표) 본교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지원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9.30.)

제10조(신입생 등록) ① 합격자는 신입생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입학포기자로 간주된다. (개정 2013.9.30.)

② 입학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 입학사정위원회가 결정한 대기자 중에서 차점자 순으로 입학기회가 주어진다. (개정 2013.9.30.)

제 2 절 편·재입학, 전과, 학점인정

제11조(편입학) ① 편입학의 지원자격은 동일계열 석사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편입생은 본교 학위과정 3학기로 편입하며, 목회학석사과정에 한하여 4학기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9.19, 2013.9.30., 2014.5.1., 2018.8.20., 2019.1.1., 2020.3.1., 2022.3.1.)

학위과정	편입학기	지원가능한 전적대학원 학위과정/전공	전적대학원 등록학기, 이수학점
목회학석사	3	목회학석사과정 또는 본교 일반신학석사과정	2학기 이상 등록, 25학점 이상 이수
	4	목회학석사과정 또는 본교 일반신학석사과정	3학기 이상 등록, 38학점 이상 이수
문학석사, 교육학석사, 일반신학석사	3	동일전공분야	2학기 이상 등록, 18학점 이상 이수

② 편입생의 학점인정은 졸업이수학점의 2분의 1까지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2.3.1.)

제12조(재입학) ① 재입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재학연학 만료로 제적된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1.11.28., 2013.9.30., 2015.3.1., 2022.3.1., 2023.9.1.)

② 재입학생은 재입학시 동일계열간의 과정변경, 전공변경, 언어변경 또는 Expat변경에 한하여 전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3.1)

제13조(재입학의 절차) ①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재입학 기간에 재입학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은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개정 2013.9.30, 2014.6.30)

③ 재입학자가 정원여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적 전의 학업성적 순으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2022.3.1.)

제14조(전과) ① 과정변경, 전공변경, 학위과정의 언어변경 또는 Expat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문학석사과정, 목회학석사과정, 일반신학석사과정, 교육학석사과정, 예배음악석사과정, 신학석사과정 간에 한하여 두 번째 학기부터 가능하며 1회에 한한다.

2-2 학사규정

단, 목회학석사과정 영어과정에서 목회학석사 한국어과정으로 과정을 전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학 후 세 번째 학기부터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1.28, 2013.9.30, 2015.3.1, 2022.3.1)

② 전과 신청자는 매학기 전과 신청기간 내에 지도교수, 소속 학과장 (또는 프로그램 디렉터),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학과장(또는 프로그램 디렉터)의 허락을 받아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8)

③ 전과는 정원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학처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3.9.30, 2022.3.1)

④ 과정 또는 전공변경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11.11.28, 2013.9.30.)

⑤ 학위과정의 언어변경의 경우, 외국국적자는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공인언어능력 점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단, 한국어과정은 한국어, 영어과정은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 출신자가 현지에서 해당언어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예외로 한다. (신설 2022.3.1)

1. 한국어과정 - TOPIK 4급 이상 (신설 2022.3.1)

2. 영어과정 - TOEFL-iBT 71, IELTS 5.5, TEPS 326이상 (신설 2022.3.1)

제15조(전적대학원의 학점인정) ① 본교 학위과정과 동일 계열의 정규대학원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입학 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0.3.1)

② 학생은 개강 전 소정기일 내에 학점인정신청서와 전적대학원의 성적증명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③ 학점인정 신청자가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학과장 또는 프로그램 디렉터가 심사하고 교학처장이 승인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단, 해당학점은 총 평점평균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석사과정 입학생에 한하여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1.9.19, 2015.3.1, 2018.2.26.)

1. 석사과정 (개정 2011.9.19., 2015.3.1., 2018.2.26., 2022.3.1.)

학위과정	학점인정 기준	학점인정 제한
문학석사	B-	15
교육학석사	B-	12

일반신학석사 예배음악석사		
목회학석사	B-	28
신학석사	A-	9

2. 박사과정: B-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학 전공은 최대 2유닛까지,
기독교상담심리학 전공은 신학 관련 교과목에 한하여 최대 20학점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8.2.26., 개정 2022.3.1., 2025.3.1.)

④ (삭제 2022.3.1.)

제16조(전과생의 학점인정) ① (삭제 2022.3.1.)

- ② 전과생이 전과 전후로 이수한 모든 학점은 총 평점평균에 산입된다. 단, 학점인정 받은 학점은 총 평점평균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 2022.3.1.)
- ③ (개정 2013.9.30., 2016.10.1., 삭제 2022.3.1.)
- ④ 교외사역실습(현장실습)이 필수요건인 경우, 전과생은 교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외사역실습 학기 수를 감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0.1., 개정 2022.3.1.)

제 3 장 교육과정

제 1 절 교육과정

제17조(교육과정) ① 각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은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② 교과목은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9.30., 2018.2.26.)

제18조(교과목의 학점단위) ①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의 학점단위는 3학점을 기본으로 하며, 커리큘럼에 따라 0~6학점으로 개설할 수 있다. 철학박사과정 신학전공의 경우 1 또는 0.5유닛으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3.9.1.)

- ②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에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3.9.30., 2018.2.26., 2023.3.1.)

- ③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되 강의 콘텐츠는 1차시 당 진행시간 25분 이상, 총 학습시간 50분 이상을 1학점으로 한다. (신설 2020.3.1)

제19조(교과목의 신설·변경) ① 교과목을 신설할 때에는 학과장이 학과별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 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는다. (개정 2018.2.26.)

- ②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과목을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다.

- ③ 교과목의 명칭, 이수학점, 교육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과장이 학과별 교수회의 또는 주임교수 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기 전에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논문지도과목) (조삭제 2022.3.1)

제21조(선수과목) ① 전공과목에 선수과목이 지정된 경우, 학생은 반드시 선수과목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해당 과목의 학과장과 교학처장이 승인할 경우 전공과목과 선수과목을 동시에 수강하거나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8.2.26.)

- ② (개정 2013.9.30., 삭제 2018.2.26.)

제21조의2(브리지프로그램) (조신설 2013.9.30., 조삭제 2022.3.1.)

제 2 절 과목개설 및 강사 관리

제22조(강의계획서)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개강 4주 전까지 학교 학사행정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제23조(강사) ① 강사임용사유 발생 시 강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2.26.)

- ② (삭제 2018.2.26.)

- ③ (개정 2013.9.30., 삭제 2018.2.26.)

제23조의 2(교과목개설 최소수강인원) 학칙 제 18조의 제 2항에 따른 과정별 교과목개설 최소수강인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30, 2014.9.1., 2015.3.1., 2016.3.1.)

과 정	교과목개설 최소수강인원
M.Div.	5 명
M.A.	5 명
M.T.S.	5 명
M.Ed.	5 명
M.W.C.M	5 명
Th.M.	3 명
Ph.D.	3 명 단, 학과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교학처장의 승인을 통해 1명으로도 개설 가능
비고	필수교과목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음

제24조(강의료 지급) (삭제 2018.2.26.)

제 3 절 등록 및 수강신청

제25조(등록) ① 학생은 수업연한 기간 동안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고 학기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이 지난 후에는 학사규정 제26조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한다.

③ 입학 시 "브릿지프로그램"을 지정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한다.

1. 브릿지프로그램만 수강하는 경우 브릿지프로그램 해당과정의 등록금을 납부한다.

2. 학위과정과 브릿지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경우 학위과정의 등록금 전액과 초과학점에 대한 브릿지프로그램 해당과정의 초과학점 등록금을 납부한다. (신설 2013.9.30)

제26조(수업연한 이후 등록) ① 수업연한이 지난 학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한다. (개정 2013.9.30., 2015.3.1., 2018.2.26., 2018.8.20., 2022.3.1)

구 분	등록금
과목수강	- 학기당 수강 학점수에 따른 수업료 - 0학점으로 개설된 수업만을 수강할 경우, 수업시간을 학점으로 환산하여 등록금을 납부
석사과정 수료자	학적유지비
박사과정 수료자	연구등록비

② (삭제 2018.8.20.)

③ 납부총액은 등록금 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의2(Expat 학생의 등록) ① EXPAT 학생의 매학기 등록은 제26조(수업연한 이후 등록)을 적용한다. 단, 수강신청 가능 학점은 학칙 제23조(학점취득제한)에 준한다. (개정 2020.3.1., 2023.3.1.)

② (삭제 2023.3.1.)

③ (조신설 2013.9.30., 삭제 2023.3.1.)

제26조의3(연구등록) ① 수업연한을 경과한 재학생 또는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재학연한 내에 학위논문을 작성하려면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

② (삭제 2022.3.1)

제27조(수강신청 및 정정) ① 수강신청: 학생은 공지된 수강신청기간동안 본교 학사행정 시스템에서 수강할 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8.2.26.)

② 수강정정: 학생은 해당학기의 수강정정기간동안 본교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수강과목을 온라인 신청하거나, 교학처에 수강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수강과목을 정정할 수 있다. 수강신청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30., 2018.2.26.)

제28조(수강철회) ① 수강정정기간 이후 학생이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매학기 넷째 주에 수강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모듈라 수업의 경우 기간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1.28., 2023.3.1.)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모듈라 수업을 제외한 다른 과목을 대신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3.9.30)

③ 수강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성적증명서의 성적란에는 W(Withdrawal)로 기재된다.

제29조(재수강) ① 학업성적 등급 C⁺ 이하인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0.3.1)

② 필수과목에서 낙제한 경우 반드시 이를 재수강하여야 하며, 이전 성적은 GR(Grade Replaced, 성적대체)로 대체된다. (개정 2013.9.30, 2014.9.1)

③ (삭제 2011.11.28)

제30조(선수과목의 수강) (삭제 2013.9.30)

제30조의2(대체과목) ① 학위과정의 커리큘럼이 변경되는 경우 학생은 지정된 대체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은 해당 과목의 학과장 및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대체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조신설 2013.9.30. 개정 2016.3.1., 2017.2.1., 2018.2.26.)

제30조의3(교차수강의 제한) 한국어과정 학생이 영어과정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제한없이 수강신청이 가능하나, 영어과정 학생이 한국어과정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재학기간 중 3학점(목회학석사과정의 경우 5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단, 추가 교차수강이 불가피한 경우 교학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최대 3학점까지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2.26., 개정 2022.3.1.)

제 4 절 시험과 성적평가

제31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 수시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성적제출) ①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성적을 학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 2013.12.31., 2018.2.26.)

②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력한 최종 성적평가표와 출석부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교학처 과장과 협의하여 학사업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개정 2013.9.30., 2018.2.26.)

③ 집중과정 (모듈라 수업)의 성적제출과 최종성적평가표 및 출석부 제출은 별도로 정해진 소정기간을 따른다. (신설 2013.9.30)

④ 단, 가을학기 졸업생 성적의 입력기간 및 최종 성적평가표와 출석부 제출기간은 졸업식의 일정에 따라 해당학기별로 정해진 소정기간을 따른다. (신설 2013.9.30)

⑤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학처장의 승인 하에 I(Incomplete)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I등급은 수업일수의 3/4 이상 출석이 인정된 경우로 제한하며, 석사과정의 집중과정(모듈라수업)과 가을학기 졸업예정자의 당해학기 이수과목의 성적등급은 'I'를 부여할 수 없다. 성적등급이 I(Incomplete)인 과목은 다음학기 개강 2주전까지 최종성적으로 정정되어야 하며, 기한 내 성적이 정정되지 않을 경우 F(또는 NP)로 확정한다. (신설 2013.9.30, 개정 2013.12.31., 2016.10.1)

1. 가족의 사망
2. 교통사고, 입원을 수반한 심각한 질병
3. 영어 박사과정 수업
4. 기독교상담심리학 상담실습 과목 (개정 2025.3.1.)
5. 임신 (신설 2016.10.1.)

제33조(성적표시) 각 교과목의 성적은 등급으로 표시하고, 평균성적은 가중평균치법을 사용한 평점으로 표시한다.

제34조(평점평균의 산출) 학생의 학기별 평점평균은 각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제35조(성적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1.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학기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3. 기타 부당하게 취득한 성적

② 부정행위자 성적의 취소여부는 학생준수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5.8)

제36조(성적정정) ① 학생이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성적확인기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정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② 학생의 성적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교과목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소정기간 내에 학교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정정사유를 기록한 후 정정할 수 있다. 단, 필요시 교학처장이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1.11.28, 2013.9.30)

③ 성적정정은 한 과목당 1회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④ (삭제 2013.12.31)

제37조(군입대자 성적인정) ① 학기 1/2이상 경과한 이후 군에 입대하는 경우, 교과목

2-2 학사규정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별도의 과제를 부과하여 학기말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학기 1/2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학기는 자동으로 휴학처리된다.

제38조(학사경고) ①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8., 2015.3.1., 2018.2.26.)

구 분	학사경고
문학석사과정 목회학석사과정 일반신학석사과정 교육학석사과정 예배음악석사과정	해당학기 평점평균 2.0 미만 또는 두과목 이상 낙제한 경우
신학석사과정	해당학기 평점평균 2.5 미만 또는 한과목 이상 낙제한 경우
철학박사과정	해당학기 평점평균 3.0미만 또는 한과목 이상 낙제한 경우

낙제는 학칙 제22조에 따라 각 학위과정별 이수인정학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며, P/NP 과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총 평점평균이 졸업이수최저학점에 미달될 경우 학사경고와는 별도로 교학처장의 경고장을 받는다.

제39조(제적) ①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2회 받은 자 (목회학석사과정은 3회)는 제적된다. (개정 2011.11.28, 2013.9.30)

② 단,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해 제적되는 학생의 경우 총 1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적을 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4.6.30)

③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전의 학사경고 횟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3.9.30)

제 4 장 학 적

제40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 제출시기 내에 휴학원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② 아래의 사유로 개인이 휴학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교학처가 직권휴학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사고나 질병 등의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2.3.1)

2. 해외 지역에서 선교 혹은 출장으로 거주 중인 경우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2년을 넘을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총 2년 이상 휴학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휴학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 하에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22.3.1)

1. 지속적인 통/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2. 군복무의 경우 (현역 입영명령서 사본과 입대(복무)확인서)

3. (삭제 2022.3.1)

4. (삭제 2022.3.1)

5. 임신/출산 및 육아 (병원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단, 육아 휴학은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부모 학생만 해당함 (신설 2014.6.30., 개정 2017.2.1)

④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이 입학 첫 학기에 위 ③항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특별휴학청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 하에 휴학할 수 있다. (신설 2013.9.30., 2022.3.1)

⑤ 위 ③항의 특별휴학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위 ③항의 5호에 해당하는 특별휴학기간은 임신/출산은 1년, 육아는 2년으로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9.30, 개정 2014.6.30., 2017.2.1, 2022.3.1)

제41조(휴학원 제출시기) 휴학원 제출시기는 매학기초 30일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40조 3항의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휴학청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 하에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4.6.30)

제42조(휴학기간의 연장) 제40조 3항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학기간의 연장을 필요로 하는 자는 복학 예정학기 휴학원 제출기간 내에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9.30., 2014.6.30., 2017.3.1.)

제43조(복학자 등록) 휴학 전에 등록금을 완납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예납으로 간주하며, 완납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등록금 미납분 및 인상분을 복학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자퇴) 자원 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이 학기 중 자퇴하는 경우, 해당학기의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한다. (개정 2013.9.30)

제45조(제적) 학생이 학칙 제32조에 의해 제적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46조(인적사항변경) 학생의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하여야 하며,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정정신청서를 교학

처에 제출한다. 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호적 등본(법원인정 서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9.30)

제47조(증명발급) 제증명서류(재학, 수료, 졸업, 성적증명 등)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증명 발급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교학처에 제출한다. 증명발급은 본인 및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능하고,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수령, 우편, Fax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9.30)

제48조(결석) ① 수업의 이수를 위한 최소 출석일수는 각 수업별 담당교수가 수업계획서에 명시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6.3.1., 2016.10.1., 2017.2.1)

② 다음 각 1호의 사유로 결석할 경우, 결석계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고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출석으로 인정된다. (개정 2016.8.1., 2017.2.1., 2018.2.26.)

1.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의 사망 (최대 1주일) (개정 2016.8.1., 2018.2.26.)

2. 병역 소집 - 3일까지

3. 학생이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의 특별행사에 참석할 경우 - 교학처장이 허가하는 일수

4. 자연재해

5. 교통사고, 출산*, 입원 및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는 중병, 법정전염병

*출산의 경우, 남학생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연이은 날짜로 최대 5일까지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개정 2012.8.20., 2015.12.01., 2016.8.1., 2023.3.1.)

③ (삭제 2013.9.30)

제 5 장 사역실습

제49조(사역실습의 정의) ① 본교는 학생들의 교회사역훈련을 위해 사역실습 제도를 운영한다.

② 교내사역실습에는 채플 및 학교행사가 포함된다. (개정 2018.2.26.)

③ 교외사역실습에는 현장실습(Field Education)이 포함된다.

제50조(사역실습 이수) ① 문학석사, 일반신학석사, 예배음악석사과정 및 목회학석사과정의 학생들은 수업연한 동안 교내사역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Expat 학생의 경우 교내사역실습은 면제된다. (개정 2013.9.30., 2015.3.1., 2018.2.26.)

- ② 문학석사과정 기독교교육학 전공 학생들은 3학기, 교육학석사 학생들은 2학기의 교외 사역실습(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수업연한이 교외사역실습 필수 이수학기보다 적을 경우, 수업연한 동안 교외사역실습을 한다. (개정 2013.9.30., 2015.3.1., 2017.2.1., 2018.2.26.)

제51조(교내사역실습) ① 채플은 학기 중 매주 지정된 요일에 있으며 학생의 경건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각 과정별로 지정된 채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6.)

② (삭제 2018.2.26.)

③ 학교행사는 학교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행사들을 포함한다. 단, 학교수련회를 학기내에 하는 경우, 학교수련회가 시행되는 요일에 수업이 있는 과목의 담당 교수는 수련회에 참석하여 수강학생들의 출석여부를 확인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8.2.26.)

④ 교내사역실습의 매학기 이수 기준은 출석률 75% 이상이다. 이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목실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과제를 제출하거나 교목실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7.3.1.)

제52조(교외사역실습) ① 교외사역실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모든 과정의 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회, 기독교단체/기관, 학교에서 교외사역실습(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1. 학생은 졸업요건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사역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목회자 또는 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2018.2.26.)
2. 현장실습의 학점은 P 또는 NP로 표기되며, 평점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8, 2013.9.30)

② (삭제 2013.9.30.)

제 6 장 성경시험 및 종합시험(개정 2024.6.1.)

제53조(외국어시험) (조삭제 2022.3.1.)

제54조(성경시험 및 종합시험) ① 성경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회학석사과정과 일반신학석사과정 학생은 학위수여를 위해 성경시험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2013.9.30., 2015.07.01., 2015.11.2., 2019.1.1., 2024.6.1)
2. 성경시험 각 과목 중에서 목회학석사과정 학생이 구약 및 신약 각각 2회 이상, 일반신학석사과정 학생이 구약 및 신약 각각 1회 이상 응시하고도 불합격한 경우, 지정된 성경

2-2 학사규정

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 학생이 교학처장에게 과제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과제이행 완료 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교학처장이 이를 승인하여 해당 과목의 합격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0.3.1., 개정 2022.3.1., 2023.3.1.)

② (삭제 2013.9.30)

③ 문학석사과정, 교육학석사과정, 신학석사과정, 철학박사과정 및 예배음악석사과정 학생은 학위수여를 위해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합시험은 각 과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단, 신학석사과정 기독교영성 전공 및 철학박사과정에 한하여 각 과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3.9.30., 2023.3.1.)

제55조(응시자격) 학위과정별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8., 2014.5.1., 2015.3.1., 2015.7.1., 2017.10.1., 2023.9.1.)

시험구분	학위과정	응시자격
성경시험	목회학석사과정	한 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0 이상
	일반신학석사과정	한 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종합시험	문학석사과정	한 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교육학석사과정	한 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예배음악석사과정	한 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신학석사과정	한 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철학박사과정	학과에서 정한 과목을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제56조(응시절차) 성경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학사 행정시스템에서 시험신청을 하고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 2024.3.1.)

제56조의2(응사회수) (삭제 2020.3.1)

제57조(시험시기) 석사학위과정의 성경시험 및 종합시험은 학기당 1회 실시한다. 단, 석사 학위과정 졸업예정자에게는 졸업예정학기에 1회의 추가시험의 기회가 주어진다. 박사학위 과정의 종합시험은 최대 연 3회 실시한다. (개정 2012.2.20., 2015.7.1., 2017.2.1., 2019.1.1., 2022.3.1., 2024.3.1.)

제58조(시험과목) ① 각 학위과정별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목회학석사과정: 구약, 신약
2. 일반신학석사과정: 구약, 신약
3. 문학석사과정: 학과에서 정한 과목
4. 신학석사과정: 학과에서 정한 과목
5. 철학박사과정: 학과에서 정한 과목
6. 교육학석사과정: 학과에서 정한 과목 (신설 2011.11.28.)

7. 예배음악석사과정: 학과에서 정한 과목 (신설 2015.3.1., 개정 2023.9.1.)

- ② 응시과목수 제한: 문학석사, 신학석사, 교육학 석사과정은 종합시험 1회당 응시과목수를 최대 2과목으로 제한한다. 단, 제57조에서 명시한 석사학위과정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시행되는 추가시험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22.3.1)

제59조(재시험) 시험 중 불합격된 과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목을 재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제60조(시험문제출제) 시험과목에 관련된 해당학과 교수가 시험문제를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1조(시험출제절차) 시험문제는 시험 전에 각 전공의 학과장이 취합해서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2.3.1.)

제 7 장 학위논문 / 연구보고서 제출 및 심사

제 1 절 학위청구논문 체제

제62조(논문의 구비사항) ① 학위 청구 논문(이하“논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8.2.26.)

1. 표지 (개정 2018.2.26.)
 2. 인준서
 3. 속표지 (개정 2018.2.26.)
 4. 제출서
 5. 목차
 6. 도표목차(필요할 경우)
 7. 본문
 8. 부록(필요할 경우)
 9. 초록
 10. 인용 및 참고문헌
 11. 영문 논문일 경우 국문 초록, 또는 국문 논문일 경우 영문 초록 (신설 2011.11.28, 개정 2013.9.30)
- ② 논문의 규격, 서식, 분량 등은 해당연도 박사과정 핸드북에 따른다. (개정 2013.9.30., 2017.2.1., 2018.2.26. 2023.3.1.)
- ③ 논문은 본인의 학위과정 언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9.30.,

2018.2.26.)

제 2 절 학위청구논문 제출

제63조(논문제출자격)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2.26.)

1. 철학박사과정에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개정 2017.2.1., 2018.2.26., 2023.3.1.)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8.2.26., 2023.3.1.)
3. 논문제안서 승인 후 소정의 논문 지도를 받은 자(개정 2018.2.26., 2023.3.1.)
4.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재학연한 이내에 학위논문 본 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자

② (삭제 2018.2.26.)

③ (삭제 2018.2.26.)

④ (삭제 2018.2.26.)

⑤ (신설 2011.11.28., 삭제 2018.2.26.)

제64조(논문제출절차)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작성, 제출하며 각 절차의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박사과정 핸드북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0.1., 2017.2.1., 2018.2.26., 2023.3.1.)

1. 논문제목 제출 (개정 2018.2.26.)
2. 논문지도교수 선정 (개정 2018.2.26., 2023.3.1.)
3. 논문제안서 심의 (개정 2018.2.26., 2023.3.1.)
4. (개정 2018.2.26., 삭제 2023.3.1.)
5. 논문 심사: 심사결과에 따라 아래 목록 하나를 따른다. (개정 2017.2.1., 2018.2.26., 2023.3.1.)

가. 수정본 제출

나. 수정본 재심사

6. (개정 2017.2.1., 삭제 2018.2.26.)

7. (개정 2017.2.1., 삭제 2018.2.26.)

8. (삭제 2023.3.1.)

9. (삭제 2023.3.1.)

10. 논문 심사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논문 인쇄본 하드카피 3부와 디지털파일을 도서관에 제출 (개정2017.2.1., 2018.2.26., 2022.3.1, 2023.3.1.)

제65조(논문지도교수) 교학처장은 교학위원회 또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한다. 단, 학문상 필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교학위원회 또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 퇴직교원 및 비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3.9.30., 2017.2.1., 2018.2.26., 2018.8.20, 2022.3.1.)

제66조(논문접수의 부결) (조삭제)

제66조의 2 (논문제안서 심의위원 위촉) 논문제안서 심의위원은 본교 교원으로만 구성되며 지도교수를 포함한 최소 3인으로 박사과정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교학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3.1., 개정 2023.9.1.)

제 3 절 학위청구논문 심사

제67조(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위촉)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5인으로 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하되, 1명의 외부심사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8, 2022.3.1, 2023.3.1.)

제68조(논문심사위원장) 교학처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장은 논문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되, 의결에 있어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심사위원의 직무와 심사의 진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위논문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0.1., 2018.2.26.)

제69조(논문심사위원의 교체금지) 논문제안서 승인 후, 논문 작성을 시작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질병, 연구학기 등)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6.10.1., 2017.2.1., 2018.2.26., 2023.3.1., 2025.3.1)

제70조(논문심사) ①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은 제64조 논문제출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16.10.1., 2018.2.26.)

② 각 심사 단계에서 논문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그리고 연구 성과 등을 면밀히 심사한다. (개정 2018.2.26.)

③ (삭제 2013.9.30)

④ (삭제 2018.2.26.)

⑤ (삭제 2018.2.26.)

⑥ 논문 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심사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한다. (신설 2016.10.1., 개정 2016.10.1.)

제71조(심사위원의 정족수)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이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예외를 둔다. (개정 2018.2.26.)

1. (신설 2018.2.26. 삭제 2023.3.1.)

2. 논문의 심사는 부득이한 경우(질병, 연구학기 등) 재적위원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18.2.26., 2022.3.1., 2023.3.1., 2025.3.1.)

3. 상황에 따라 심사는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2.3.1.)

제72조(논문심사일정) 논문 심사 시기 및 절차 등에 일정에 관한 것은 매학기 공지한다.(개정 2013.9.30., 2017.2.1., 2018.2.26. 2022.3.1.)

제73조(논문심사의 판정) 각 논문심사위원은 본 규정 제70조② 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2인 이상,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4인 이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부여한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8.2.26.)

제74조(논문심사의 결과보고) 논문심사위원장은 각 논문 심사단계가 마친 후 각 심사위원의 심사표와 심사종합평정표를 교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8.2.26. 2022.3.1.)

제75조(논문성적의 기재) (조삭제 2018.2.26.)

제76조(학위논문의 재심사) 논문 심사단계에서 “불합격”(P1 또는 NP) 판정을 받은 학생은 논문을 수정, 보완하거나 새로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6.10.1., 2017.2.1., 2017.5.8., 2018.2.26., 2023.3.1.)

① 매학기 종강일 기준 6주 이전에 심사결과가 확정된 경우, 종강일 기준 2주 이전까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등록비 및 재심사 경비는 박사과정 핸드북에 명시된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18.2.26., 개정 2023.3.1.)

② (신설 2018.2.26. 삭제 2023.3.1.)

③ 각 논문 심사단계에서 표절 또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자동 실격(F)으로 판정한다. 표절 및 부정행위의 검증과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본교 학생준수규정과 부정행위자 징계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2.26., 개정 2023.3.1.)

제77조 (조삭제 2022.3.1.)

제78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3.1.)

제 4 절 연구보고서 (절삭제 2022.3.1.)

제70조의 2 (조삭제 2022.3.1.)

제 8 장 학위수여

제79조(학위수여의 확정) 교학위원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의 수여여부를 결정하고, 교학처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학위수여를 확정한다.

제80조(학위종별)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학생의 전공분야에 따라 학칙 제2장 5조에 명시된 것과 같다.

제81조(학위수여자격) ① 학칙에 있는 과정별 졸업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은 학위수여자격을 가진다. (개정 2013.9.30., 2014.9.1., 2018.2.26.)

② 외국국적자의 경우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언어능력점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단 한국어과정은 한국어, 영어과정은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 출신자가 현지에서 해당언어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3.1.)

1. 한국어과정 - TOPIK 4급 이상 (신설 2022.3.1.)
2. 영어과정 - TOEFL-iBT 71, IELTS 5.5, TEPS 326이상 (신설 2022.3.1.)

제82조(학위수여 사정) 총장은 본교 교학위원회로 하여금 학위수여 자격을 사정하게 한다. 단, 특이사항이 있을시 대학원위원회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건을 사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1)

제83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위수여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학칙에 표시된 과정별, 전공별 명칭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84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 시기는 년 2회, 학기말로 한다. (개정 2011.11.28., 2017.10.1)

제85조(학위기 서식)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기 서식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15.3.1)

제86조(학위수여의 취소절차) 학위수여의 취소는 대학원위원회가 결의하여 총장이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학사규정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학사규정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54조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8-2019학년도 수료생은 응시회수에 관계없이 지정된 성경과제를 수행하여 성경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6조(수업연한 이후 등록), 제26조의3(연구등록) 및 제40조(휴학)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2018 커리큘럼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53조(외국어시험)에서 헬라어능력평가지험에

합격한 경우 목회학석사과정 기초헬라어 과목을 필수이수과목에서 제외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12조(재입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23년 3월 1일 이전에 재학연한 만료로 제적된 학생에 한하여 제적 이전의 휴학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학기간을 재학연한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BY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Name

HAS BEEN ADMITTED TO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Concentration)
CUM LAUDE

AND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HONORS
APPERTAINING THERETO.

WITNESS THE SEAL OF THE SCHOOL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AT SEOUL, KOREA
MONTH DD, YYYY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PRESIDENT

DEAN OF ACADEMIC PROGRAMS

Yonsei University

BY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Name

HAS BEEN ADMITTED TO THE DEGREE OF

Master of Divinity

CUM LAUDE

AND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HONORS
APPERTAINING THERETO.

WITNESS THE SEAL OF THE SCHOOL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AT SEOUL, KOREA
MONTH DD, YYYY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PRESIDENT

DEAN OF ACADEMIC PROGRAMS

Trinity Graduate University

BY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Name

HAS BEEN ADMITTED TO THE DEGREE OF

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CUM LAUDE

AND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HONORS
APPERTAINING THERETO.

WITNESS THE SEAL OF THE SCHOOL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AT SEOUL, KOREA
MONTH DD, YYYY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PRESIDENT

DEAN OF ACADEMIC PROGRAMS

Yonsei University

BY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Name

HAS BEEN ADMITTED TO THE DEGREE OF

Master of Theology

(Concentration)

CUM LAUDE

AND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HONORS
APPERTAINING THERETO.

WITNESS THE SEAL OF THE SCHOOL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AT SEOUL, KOREA
MONTH DD, YYYY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PRESIDENT

DEAN OF ACADEMIC PROGRAMS

Yonsei University

BY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Name

HAS BEEN ADMITTED TO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Area)

CUM LAUDE

AND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HONORS
APPERTAINING THERETO.

WITNESS THE SEAL OF THE SCHOOL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AT SEOUL, KOREA
MONTH DD, YYYY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PRESIDENT

DEAN OF ACADEMIC PROGRAMS

Yonsei University

BY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Name

HAS BEEN ADMITTED TO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UM LAUDE

AND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HONORS
APPERTAINING THERETO.

WITNESS THE SEAL OF THE SCHOOL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AT SEOUL, KOREA
MONTH DD, YYYY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PRESIDENT

DEAN OF ACADEMIC PROGRAMS

Trinity Graduate University

BY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Name

HAS BEEN ADMITTED TO THE DEGREE OF

Master of Worship and Church Music

CUM LAUDE

AND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HONORS
APPERTAINING THERETO.

WITNESS THE SEAL OF THE SCHOOL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AT SEOUL, KOREA
MONTH DD, YYYY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PRESIDENT

DEAN OF ACADEMIC PROGRAMS